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75
----------	------

2016년 9월 6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8월 17일, 김현기 의원 외 11명
-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6년 9월 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현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 소재한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악취농도 측정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제16조에 의거 구성 운영중인 주민협의회 주민대표의 추천대상을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주민까지 확대하여 주민협의회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주민협회의 주민대표 추천대상이 주변영향지역(물재생시설 주변

300m이내) 거주 주민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주민까지 확대하여 추천될 수 있도록 함(안 제16 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관련조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원안참조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원안참조

4.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물재생센터에서 구성·운영 중인 주민협의회 위원 자격조건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변영향지역(물재생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를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에 3년 이상 거주한자로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민협의회 위원자격 확대안에 대한 의견(안 제16조제1호)

- 현행 조례 제15조에 따라 물재생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300m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표 1] 주민협의회 의견청취 및 기능(조례 제15조, 제17조)

제15조(주민협의회 의견청취) 시장은 서울시에 소재한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때는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 의견의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5.10.8.>

1. 복합악취농도 측정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7조(주민협의회 기능) 주민협의회는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해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표한다. <개정 2015.10.8.>

- 이와 관련하여, 2015년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회의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1년에 4회 정도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물재생 시설 내 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악취 저감대책 등에 대해 논의 하고 있음.((표 2) 참조)

[표 2]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회의 개최 현황(2015년)

구 분	회의명(일시)	안건내용	비고
중량	1회 정기회의 (15.3.20.)	- 15년도 사업추진계획	
	2회 정기회의 (15.6.9.)	- 센터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관련	
	3회 현장견학 (15.9.7.~9.9.)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견학	
	4회 정기회의 (15.12.18.)	- 센터주차관제시스템 설치 - 잉여소화가스 도시가스정제 판매 - 고도처리시설 전문가 합동진단	
탄천	1회 정기회의 (15.1.28.)	- 주민협의회 협의 당사자 주체 정의(서울시, 탄천환경) - 복개4단계 활용, 텃밭 논의	
	2회 정기회의 (15.3.24.)	- 텃밭 철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주민 요구 검토 요청 - 슬러지건조시설 증설 계획	
	3회 정기회의 (15.5.29.)	- 복개4단계 상부활용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사항 - 야외무대 확장공사	
	임시회의 (15.7.15.)	- 복개4단계 상부 빙상장 건축 - 하수열 이용 지역발전기금 운영규정	
	임시회의 (15.8.31.)	- 복개4단계 상부 빙상장 건축 건 - 하수열 이용 지역발전기금 - 운영규정	
	4회 정기회의 (15.9.24.)	- 복개4단계 상부 빙상장 및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설 - 복개4단계 복개공사 공정률	
서남	1회 정기회의 (15.4.23.)	- 센터 합동 악취점검 실시	
	2회 정기회의 (15.6.24.)	- 센터 합동 악취점검 실시	
	3회 정기회의 (15.8.17.)	- 인근주민 불편으로 인해 마곡지구 공사차량 센터내부 도로 이용 요구	
	4회 정기회의 (15.12.3.)	- 센터 악취점검 실시	
난지	1회 정기회의 (15.3.12.)	- 주민체육행사 센터 직원 참여 - 산책로 및 배드민턴장 설치 협의회와 협의 진행 - 보안문제해결 후 후문개방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우선권 요구	
	2회 정기회의 (15.7.29.)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논의 - 센터내를 지나가는 대덕동과 자유로를 연결도로 건설 - 센터 시설보안 및 주민의 시설이용에 협조 요청	
	3회 정기회의 (15.12.29.)	- 환경개선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주민협의회 회의 정례화 필요 - 체육시설 진행 추진현황은? - 악취피해자에 대한 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신속한 시설개선 요구	

※ 자료제공: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 이처럼, 주민협의회는 현행 조례 제16조(주민협의회 구성)에 따라 시장이 해당지역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전문가 2명을 포함 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행 조례는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영향지역 거주 세대가 소수에 불과한 경우 원활한 추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 편익시설 등에 대해서는 주변영향지역 뿐만 아니라 같은 행정동 주민들과 공유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

[표 3] 주민협의회 구성(조례 제16조)

제16조(주민협회의 구성) 주민협의회는 시장이 해당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1. 주변영향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같은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 세대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중 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2. 제1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이공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 연구기관의 이공계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또는 이공계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명

- 실제로, 중량물재생센터의 경우 성동구 송정동과 용답동에 위치하면서 중량천으로 인해 이격되어 있는데, 주변영향지역(300m 이내) 내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1,401세대에 불과하여 주민협의회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물재생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에 의거 하수도사용료를 전액 면제¹⁾ 받고 있으며, 기타 주변영향지역 접경지역은 편익시설 설치나 주민지원사업 등에 따른 직·간접 혜택이 있을 수 있음.

1) 2015년 기준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세대수:21,372가구(중량 1,401, 탄천 12,701, 서남 7,270)
→ 가구당 평균 44,350원, 총 감면액 948백만원

- 따라서,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협의회 위원 자격을 현행 주변영향지역 내로 국한하기 보다는 개정안과 같이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 여겨짐.([표 4] 참조)
- 이를 통해 주민협의회 구성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짐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표 4]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구분	물재생센터 소재 행정동	비고
중량물재생센터	성동구 송정동, 용답동	
탄천물재생센터	강남구 일원1동, 일원2동	
서남물재생센터	강서구 가양1동, 방화1동, 방화3동	
난지물재생센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고양시 추천에 의해 위촉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주변영향지역에 3년 이상 거주”를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에 3년 이상 거주”로 하고, “같은 주변영향지역 내”를 “같은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주민협의회 구성) (생략)</p> <p>1. <u>주변영향지역에 3년 이상 거주</u>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역주민으로서 <u>같은 주변영향지역 내</u> 거주 세대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중 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p> <p>2. (생략)</p>	<p>제16조(주민협의회 구성) (현행과 같음)</p> <p>1. <u>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에 3년 이상 거주</u> ----- <u>같은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u> ----- ----- ---</p> <p>2. (현행과 같음)</p>